

2022년 4월 17일

출입국체류관리청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습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기능실습생
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에 대해

출입국체류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되어 실습 상태를
유지하기 어려워진 기능실습생, 즉 특정기능외국인이 본국에서 계속
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청과 연대해 특정산업분야의 재취업
지원을 행하기로 했다. 또한 일정의 요건을 갖추면 <특정활동>
체류자격을 허가해 외국인이 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
했다.

【대상자】

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되어 실습 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
기능실습생 혹은 특정기능외국인 등

※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부여되는 체류자격·기간】

특정활동 (취업가) · 최대 1년

【행할 수 있는 활동】

수용기관에서 특정기능외국인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배운다.

활동

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제한한다.

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
행정명령 (1990년 법무성령제16호) 의 법별표 제1의 2의 표 특정기능 항의
아랫부분 제1호 하(八)에 규정하는 기능 (시험에 의해 증명된 것에 한함.) 을
습득하기위해아래의본국의공공기관과의계약에기초해해당기관 업무에종사하는활동

기
기관명 ○○○주식회사
(본점소재지 ○○현○○시○○초○○번○○호)

【요건】

가 신청인이 본 특례조치로 인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련된 보수 액이
일본인 종사자의 보수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.

나 신청인이 수용기관의 특정기능외국인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를 희망할
것 (희망하는 특정산업분야에 관련된 기능시험 등의 합격이 필요한 자에 한
함)

또한, 제조업 3개 분야 (소형재사업분야, 산업기계제조업분야, 전기 ·
전자정보관련산업분야) 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국내의 제조업 각분야에서 대상이 되는
업무구분 (직종) 에서 근무 · 실습 중에 해고된 것에 한 함.

다 수용기관이 신청인이 특정기능외국인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희망이
있음을 이해한 후, 신청인의 고용을 희망할 것.

라 수용기관이 신청인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것이 인정될
것 (체류외국인 (취업자격에 제한없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자도
포함된다.) 을 고용한 실적, 출입국 ·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)

마 수용 기관이 신청인에 대해 특정기능으로 이행해 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 등의 습득을 지도, 조언하는 것은 물론, 체류중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원 (관계행정기관의 상담창구를 안내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기관에 동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.) 을 담당할사람을확보해적절하게행대응할것이예상될것
(주) 지원은 예컨대 수용기관이 고용하는 신청인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감리단체나 특정기능으로 이행할 때 지원을 위탁할 예정인이었던 등록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다.

바 수용기관이 신청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경우,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 신속하게 보고할 것.